

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모바일 청약, 현장접수 불가]

모집	단지
「택1	신청

중복신청불가」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A3블록)

죽동 천년나무 5단지 (대덕 R&D특구 A5블록)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m²이하 687세대(10년공임 275, 분납임대 412세대) 중 예비입주자(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5.9월)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m²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92세대 중 예비입주자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6.8월)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기본 안내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4.01.(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4.01.)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하며,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 해야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 분만 유효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 시 계약해지)
 - (예시)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네이쳐뷰 신청 및 계약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 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III. 신청일정 및 장소 및 신청방법 , IV.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를 참조하시기 비랍니다)

구 분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제출)
일시	2025.04.14.(월) (10:00~16:00)	2025.04.16.(수) (16:00 이후)	2025.04.17.(목) ~ 04.21.(월) ※ 2025.04.21(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장소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현장접수 불가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등기우편주소 : (우34178)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2층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됩니다.
-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 가격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3에 의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분납임대주택 공급 개요

■ 분납임대주택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주택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 : 최초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단, 금회 예비자모집대상 주택은 입주 8년차가 경과하여 70%의 분납금 납입 후 입주)

구분	납부시기	분납금액 산출방식	분납율	비고
초기분납금	계약시 등	최초주택가격 x 30%	30%	계약시, 입주시
입주4년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 ⁴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20%	①,② 중 적은 금액 *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중간분납금 -	입주8년	①최초주택가격 x (1+이자율) ⁸ x 20% ②감정평가금액 x 20%	20%	산정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함
최종분납금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 x 30%	30%	

- ※ 계약시 등 : 계약시, 입주시
- ※ 입주4년, 입주8년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2015.08.28)로부터 4년 또는 8년이 지난날
-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Ι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148번길 22(지족동 1050번지)
(A3블록)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687세대(10년공임 275, 분납임대 412세대) 중 예비입주자
죽동 천년나무 5단지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72(죽동 712번지)
(대덕 R&D특구 A5블록)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92세대 중 예비입주자

						세대별	주택면적	(m²)		공유				-17						
단지명 유	유형	주택형 발코니 유형			공급면?	덕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대지	최고	건설	공가	기존 예비		최초입주				
(블록)		, , ,				πg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면적 (계)	면식 (m²)	층수	오수	오수	예비 자	호수	지정기간	방식
	10년	051.8800A (51A)	확장	51.88	22.2113	74.0913	4.1582	25.8920	104.1415	44	15	151	22	-	55					
대전노은3 네이쳐뷰	임대	059.6900A (59A)	확장	59.69	25.5550	85.2450	4.7842	29.7898	119.8190	51	18	106	6	-	12	'15.7~	지역			
(A3블 록)	분납	051.8800A (51A1)	확장	51.88	22.2113	74.0913	4.1582	25.8920	104.1415	44	17	238	4	-	6	'15.8	난방			
	임대	059.6900A (59A1)	확장	59.69	25.5550	85.2450	4.7842	29.7898	119.8190	51	19	137	1	-	2					
		051.9800A	확장	51.98	21.6347	73.6147	4.1554	25.6624	103.4325	37	17	96	6	4	10					
죽동		059.8900A	확장	59.89	24.9270	84.8170	4.7877	29.5676	119.1723	43	20	137	8	3	15					
천년나무 10년	10년 임대	059.9400B	확장	59.94	24.9478	84.8878	4.7917	29.5922	119.2717	43	20	69	1	3	-	'16.5~ '16.7	개별 난방			
		059.9500B1	확장	59.95	24.9519	84.9019	4.7925	29.5972	119.2916	43	21	38	3	1	6					
		059.9800A1	확장	59.98	24.9644	84.9444	4.7949	29.6120	119.3513	43	21	152	4	-	12					

- 본 공고문은 각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A3블록) 2025.9월, 죽동 천년나무5단지(대덕 R&D특구 A5블록) 2026.8월)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분양전환 개시 전일까지**이며, **만기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 임대조건은 **2025.04.01. 기준**이며, <u>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동별·층별·층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u>

(단위: 원)

			임다	조건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전환이율 6% 예시)		
단지명 (블록)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임대보증금	임대료
(27)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 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247	6-11-0-6	- 11-m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051.8800A (51A)	33,864,000	6,772,000	27,092,000	508,160	60,000,000	93,864,000	208,160
(A3블록)	059.6900A (59A)	43,706,000	8,741,000	34,965,000	599,810	71,000,000	114,706,000	244,810
	051.9800A	31,532,000	6,306,000	25,226,000	512,350	61,000,000	92,532,000	207,350
75 +U4.15	059.8900A	41,404,000	8,280,000	33,124,000	577,220	69,000,000	110,404,000	232,220
죽동 천년나무 5단지 (대덕R&D A5블록)	059.9400B	41,050,000	8,210,000	32,840,000	574,650	68,000,000	109,050,000	234,650
	059.9500B1	41,081,000	8,216,000	32,865,000	574,850	68,000,000	109,081,000	234,850
	059.9800A1	41,509,000	8,301,000	33,208,000	577,900	69,000,000	110,509,000	232,900

■ 분납임대주택 임대조건 (분납금과 월 임대료)

- 초기·중간 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최초입주세대 기준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4년, 8년) 및 최종 분납금 납입시기는 최초세대입주일 기준입니다.
- 임대조건은 2025.04.01. 기준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월 임대료(현재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셔야 합니다.

(단위: 원)

			임대조	건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전환이율 6% 예시)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mark>초</mark>	기 분납금+입주4		전환보증금			
(블록)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월임대료	한도액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전노은3지구 네이처뷰	051.8800A (51A1)	86,692,000	17,338,000	69,354,000	97,830	7,000,000	93,692,000	62,830
(A3블록)	059.6900A (59A1)	99,748,000	19,949,000	79,799,000	112,560	10,000,000	109,748,000	62,560

-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합니다.
-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명 (블록)	주택형	타입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대전노은3지구 네이처뷰	051.8800A	51A	114,127	22,134	91,993
(A3블록)	059.6900A	59A	131,313	25,466	105,847
	051.9800A	51A	111,020	16,953	94,067
TE 404.10 -01-1	059.8900A	59A	128,557	19,532	109,025
죽동 천년나무 5단지 (대덕R&D A5블록)	059.9400B	59B	127,930	19,549	108,381
(-11-11-000 7.52-7)	059.9500B1	59B1	127,983	19,552	108,431
	059.9800A1	59A1	128,743	19,562	109,181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납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산정.공고한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명 (블록)	주택형	타입	계(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대전노은3지구 네이처뷰	051.8800A	51A1	114,127	22,134	91,993
(A3블록)	059.6900A	59A1	131,313	25,466	105,847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통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3에 의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분양전환시기	공통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10년 임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	분납 임대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공통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Π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1.)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예)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분납임대 아파트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네이쳐뷰 신청 및 계약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지)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 :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25.04.17.~04.21.)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등 교체요구 불가)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m I\hspace{-.1em}I\hspace{-.1em}I}$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등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5.04.14.(월) (10: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 현장접수 불가	내 청약플러스 (<u>https://apply.lh.or.kr</u>)

•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rightarrow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rightarrow 인터넷신청 \rightarrow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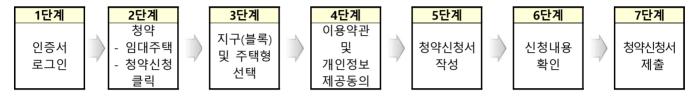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 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 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청약플러스(<u>https://apply.lh.or.kr)</u> → 인증서로그인(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 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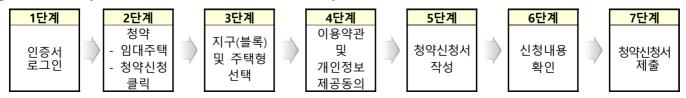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선정제외 및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V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등 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계약체결
일시	2025.04.16.(수) (16:00 이후)	2025.04.17.(목) ~ 04.21.(월) ※ 2025.04.21.(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장소	LH 청약플러스 (<u>http://apply.lh.or.kr</u>)	등기우편주소 : (우34178)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2층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순번대로 별도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시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됩니다.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안내 (2025.04.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 당첨자는 서류제출일(2025.04.17.(목)~04.21.(월))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4.0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요청]

서류	류유형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필수 추가 해당서류 (해당자)		[2025.04.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0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개				
0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1통 및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0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0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0							
	0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V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도 포함)도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 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단,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블록)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최초입주지정기간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A3블록)	2013.10.04.	2015.07.15.~08.28
죽동 천년나무 5단지(대덕R&D A5블록)	2014.03.31.	2016.05.27.~07.03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블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지하주차장 차로 / 출입구
대전노은3 네이쳐뷰 (A3블록)	305동 3.4라인 앞 울타리쪽 2개 307동 앞 울타리쪽 2개 304동 1호세대 외벽 옆 1개 304동 3.4라인 앞 1개 303동 5.6라인 앞 1개 어린이집 뒤 울타리쪽 1개 302동 5.6라인 울타리 2개 309동 울타리쪽 2개	왕복 2차로 / 2.3m
죽동 천년나무 5단지 (대덕R&D A5블록)	-	왕복 2차로 / 2.3m

[※] 상기 자료는 각 단지 개별 관리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므로 각 단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1.



단 지 명 :	(신청형 :)	핸드폰 번호 :
신청자명 :		접 수 번 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낚아시작이크 버린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u>신청자는 6개월,</u> 당첨(예비)자는 5년
자산 기타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민감정보 수집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장관</u>	<u>주택소유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u>주택, 소득 및 자산,</u> <u>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청약신청일로부터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신청자는 6개월,</u> 당첨(예비)자는
<u>한국부동산원</u>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u> (가입은행, 계좌번호, <u>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u>)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u>5년</u>
<u>전산관리지정기관</u>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mark>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mark>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